

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11의3] <신설 2023. 1. 11.>

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(제33조의3제1항 관련)

1. 교육 시기

구분	신규교육	정기교육
시기	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	2년 마다

비고

- 정기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종전에 받은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종전에 받은 정기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.
-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2. 교육 내용

구분	외항선의 사업장 소속	내항선의 사업장 소속
교육내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관리체제 수립·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조사, 질문, 평가 등 심사 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해운·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·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관리체제 수립·운영 관련 국내법령 조사, 질문, 평가 등 심사 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해운·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·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

3. 교육 시간

구분		외항선의 사업장 소속	내항선의 사업장 소속
교육시간	안전관리책임자	16시간 이상	14시간 이상
	안전관리자	14시간 이상	12시간 이상

4. 교육시간의 면제

- 가.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이나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
나.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제2호의 교육내용과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.